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1.

발 의 자 : 문금주·박지원·김성범
김준환·임미애·주철현
박해철·윤준병·송옥주
이개호·이용선·장종태
권향엽·조인철·복기왕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·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“농업인의 날”로 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, 법정기념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와 국토·환경을 지켜 온 사람들의 공익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및 가치 등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음. 특히,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은 생산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,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지·생태환경과 국토

를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적 주체라 할 수 있음.

이에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,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“농업인의 날”을 “농민의 날”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)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농업인의 날)”을 “(농민의 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1항 및 제2항 중 “농업인의 날”을 각각 “농민의 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<u>농업인의 날</u>) ① 농업·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 리고,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<u>농업인의 날</u> 로 정한다.	제4조의2(<u>농민의 날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민의 날</u> -----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<u>농업인의 날</u> 에 적합 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농민의 날</u> ----- ----- -----.